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5. 4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4월 19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2002. 5. 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 제안이유

- 복합 상가 및 빌딩 임대 수용가에 대한 업종적용이 단일화 되어 수용가의 요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부 미비한 요율체계를 정비코자함

나. 주요골자

-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단독가구들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량을 산출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용한다.(제29조3항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현수)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도요금 체계가 가정용수도와 업무용·영업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주상복합상가 및 빌딩임대 수용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무용·영업용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 동조 제2항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와 내용이 상치되고, 문맥에 있어서 내용이 중복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단서조항을 추가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